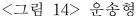
② 구난 및 견인형: 고장 및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및 견인 할 수 있는 <그림 15>과 같은 구조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.







<그림 15> 구난 및 견인형

- (3) 업종에 따른 분류(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)
 - (가) 영업용(일반, 개별, 용달)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또는「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」에 따라 면허(등록을 포함한다)를 받거나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
 - (나) 비영업용: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 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

5.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 중점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

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 작업의 중점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은 <표. 1>과 같다.

<표. 1> 중점위험요인과 안전대책

재해 유형	위험 요인	안전 대책
충돌	후진중 후진경보 장치 미작동으로 충돌 위험	후진경보장치 작동상태 확인 및 유도자 배치
	운행중 휴대폰 사용이나 DMB 시청 등 으로 충돌 위험	운행중 휴대폰 사용 및 DMB 시청 금지
	덤프트럭에서 하역 작업후 적재함이 올 려진 상태에서 주행중 교량이나 지하차 도 구조물에 부딪치는 충돌 위험	덤프트럭 적재함의 하강상태 및 교량이나 지하차도 등의 하 부 통과시 통과높이 제한 표시 와 도로면의 구배를 확인 후 통과